

【 10 】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5. 1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제정이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보험가입금액은 5억원이상으로 함(안 제3조)
- 다.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함(안 제5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전문개정	1978 · 4 · 6	대통령령	제 8919호	
개정	1979 · 2 · 1	대통령령	제 9302호	
	1982 · 5 · 29	대통령령	제10829호	
	1983 · 4 · 25	대통령령	제11118호	
	1985 · 6 · 29	대통령령	제11715호	
	1988 · 12 · 19	대통령령	제12555호	(식식중본적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 일부개정령)
	1990 · 10 · 19	대통령령	제13141호	(식식중본적관삭제를위한주민등록법시행령등의 일부개정령)
	1991 · 4 · 16	대통령령	제13351호	
	1993 · 3 ·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 12 · 28	대통령령	제14032호	
	1994 · 12 · 31	대통령령	제1448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 일부개정령)
	1997 · 4 · 12	대통령령	제15341호	
	1999 · 3 · 12	대통령령	제16177호	
	2002 · 12 · 31	대통령령	제17867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의 위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동계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4 · 12 · 31>

제 3 조 (신고 · 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호적부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 12 · 31>

제 4 조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전적의 통보) ①법 제 3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

(후 152)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인감증명법시행령

때

-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제16조 (인감변경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 2. 인감증명발급대장,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 입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 10년

(전문개정 2002·12·31)

제18조 (열람의 금지) ①증명청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열람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1>

제19조 (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500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동기권리자로 하는 동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후 152)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인감증명법시행령

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 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3040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인감재신고의 기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1978년 9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의 보관청)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과 재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증전의 인감대장은 효력 상실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이 이를 보관한다.

부 칙 <79·2·1 대령9302>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2·5·29 대령10829>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4·25 대령11118>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6·29 대령11715>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19 대령1255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날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0·10·19 대령131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증전의 규정과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날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1·4·16 대령13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

(후 152)

정보통신망

경 기 도

우 441-701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도청앞길 / 전화 (031)249-4400 / 팩스 (031)249-4500
 처리과 자치행정과 과장 이한대 자치지원담당 오택영 담당자: 이인재

문서번호 자치12130-449
 시행일자 2003.02.04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18_머.버(전 시군)
 참조 인감업무담당과장

선령	과장	크우행		지시	
접수	일자	2003.02.04		결재·공람	담당 <i>이인재</i>
	시간	오후 06:49			
번호	374				
처리과	생활인원과				
담당자	직원	김지영			
심사자			심사일		

제목 개정 인감증명법시행령 시행대비 철저

1. 행정자치부 주민12130-93(2003. 1.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02.12.31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보형· 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감담당공무원보형· 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1부. 끝.

경기도지사



○○시(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 및 공제 가입 금액표

◎서울신용보증보험

가입년도 보험가입금	1년	2년	3년	4년	5년
5천만원	42,100	80,000	126,320	168,430	210,540
1억원	76,250	147,230	235,220	313,630	392,040
2억원	141,100	266,220	420,350	690,470	700,590
3억원	190,930	362,780	572,810	763,750	954,690

※계약만료일로부터 보험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한국재방재정공제회

보험가입 금액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기본요율	40,900		40,900		40,900		40,900	
연간총보상 한도액	1억	3억	1억	5억	2억	10억	3억	15억
공제회비	40,900	51,125	76,483	107,976	143,968	195,093	202,046	234,357

※지방재정공제회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으며 공제기간은 1.1.부터 12.31일까지임.(매년 갱신할 수 있음.)

매년 갱신할 경우 소급담보일자는 최초 보험계약일자이며,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후 향후 5년 이내에 배상청구할 수 있음.